사단법인 옳음 정관

2020. 2.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옳음(이하 ‘법인’)이라 하고, 영어로는 ‘ORUM’으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5층(우림빌딩)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저소득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증진,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익 입법 및 법집행을 위한 지원
2. 국내외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
3. 후견 업무의 수행 및 연구 지원
4. 노동 인권(직장내 갑질, 성희롱 포함), 구직 중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군내 인권침해, 여성 및 소수자 차별 등에 대한 구제 및 지원
6. 동물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
7.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교육비・후원금 지원 및 자활사업
8. 위 각 활동을 위한 법률 상담, 소송비용 지원 기타 권익 증진 활동
9. 위 각 활동을 수행하는 자(개인, 단체 포함)에 대한 재정・법률지원 및 협력사업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개인, 법인 포함)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 회비, 가입, 탈퇴,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을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정관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법인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② 법인은 감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기타 임원으로서 계속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른 이사의 3분의 1 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제18조(총회 소집 공고)

① 총회의 소집 공고는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서면 통지는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총회 의결권은 개회 전까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3조(소집 방법)

① 이사회의 소집 공고는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서면 통지는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결과는 이사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하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개회 전까지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기구 및 조직

제26조(사무국 등)
①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필요한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시 출연재산의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 정관 제36조에 의한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회, 일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의 과실에서 나오는 수익금
3. 사업수익금
4. 기부금
5. 전년도 이월금
6. 출연금 기타 수입

제30조(차입금)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3

자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설립된 해의 회계연도는 설립일에 개시한다.

제32조(예산의 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기부금 및 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 실적을 공개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요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운영규정) 본 정관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옳음(ORUM)

이 사 장	박 시 환 (인)	발 기 인	박 찬 (인)
발 기 인	김 국 일 (인)	발 기 인	강 경 훈 (인)
발 기 인	조 인 선 (인)	발 기 인	김 신 혜 (인)
발 기 인	이 민 우 (인)	발 기 인	백 민 (인)
발 기 인	김 혜 림 (인)		

<별지 1>

기 본 재 산 목 록

(20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20,000,000원	회원 출연금
주식	주		
채권			
【동산 소계】			
건물	㎡		
건물	㎡		
전(田)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林野)	㎡		
임야(林野)	㎡		
임야(林野)	㎡		
임야(林野)	㎡		
etc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20,000,000원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